

金審議委員會의 設置 根據인 條例는 廢止되는 內容입니다.

위의 內容을 우리 委員會에서 신중하게 審査한 끝에 既存 公共料金審議委員會를 廢止하고 더 安定된 物價對策과 消費者 保護를 위해서는 物價對策委員會의 設置運營이 질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同 條例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습니다.

구체적인 審査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報告 드린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的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그러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品質管理推進協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과 서울特別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5.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재정기획관, 서울지방국세청 직세국장 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교수·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